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1 - 5호

공 시 송 달

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(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참조)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1. 협의 내용

협 의 기 간	2021년 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(21일간)
협 의 장 소	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(5층)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
협 의 방 법	손실보상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계약성립
보상하는 시기, 방법 및 절차	계약체결후 5일이내(공휴일제외) 약정계좌로 보상액 송금(현금일시보상)
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	①인감증명서 1통(용도:보상금수령용) ② 주민등록등본 1통③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(부동산매수자:상주시, 법인등록번호:3718 주소:상주시 상산로 223)을 기재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초본 1통 (주소이력사항이 모두나오는 것) ⑤통장사본 ⑥인감도장 ⑦신분증
기타 참고사항	①상속등기가 안된 토지는 상속등기후 보상금 수령신청 ②등기상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수령신청

2. 보상액 내역 : 붙임 참조(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상액 내역조서)

3. 기타사항 및 문의처 : 공고기간(14일 이상)이 경과된 경우에는 『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』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보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(☎053-320-07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9일

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